

‘삼고무’ 논란과 안무저작권의 미래

| 홍승기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_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화해권고 결정

삼고무 논란이 일단 진정되었다. 이매방 선생의 유족과 이매방 선생 문하생 사이의 분쟁이었다. 저작권 등록을 한 유족이 문하생 모임인 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이하, 보존회)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2년 4월 29일 법원은 화해를 권고하였다.¹⁾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쪽이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2022년 5월 17일경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보존회는 “소송으로 스승님을 더 이상 욕보일 수 없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제 기판력의 작용으로 다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삼고무 논란은 2018년 초에 시작되었다. 이매방 선생이 세상을 뜨고 저작권이 가족에게 상속되었다. 이매방 선생의 사위가 법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를 설립하였고, 부인과 장모에게 상속된 저작권을 법인이 양도받았다. 법인 명의로 전국의 공연장에 발송된 내용증명에서는 “이매방 선생이 창작한 ‘삼고무’, ‘오고무’를 공연(강습회, 연수회)하거나 이를 변형, 각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공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매방 선생 작품을 공연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매방 선생에게 춤을 배운 문하생들의 생계가 문제였다. 그들은 무용학원 운영이 생업이었을 것이고, 이매방 선생의 춤은 중요한 학습도구였을 것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유족과 보존회 사이에서는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등 4종의 안무는 이매방 선생의 창작물로 확정되었다. 보존회는, 정회원만을 실연자로 하고 이매방 선생이 창작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유족의 동의 없이 공연할 수 있게 되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448 결정

2. 무용 안무와 창작성의 평가

무용의 창작성은 안무(按撫, choreography)에 있다. 연극 연출의 창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규정이 뒤죽박죽이지만, 누구도 무용 '안무'의 창작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같은 공연예술이더라도 대본(text) 의존성에서 '안무'와 '연출'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극 연출과는 달리, 무용의 안무는 대본이 없거나 부실하여 거의 온전히 안무가의 머릿속에서 무용수의 동선을 짜고 합(合)을 이루어 내야 한다. 무용 공연에 '연출', '협력연출'이라는 명목으로 연극 연출가를 끌어들이는 풍조에 대해서, 실력 있는 무용가들은 상상력이 빈곤한 반쪽짜리 안무가들이 무용의 품격을 해친다고 못마땅해 한다.

우리의 궁중 제례, 서양의 전통 발레의 원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창작성 짙은 작품을 만들었다면 새로이 창작성이 형성된 부분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무용평론가 성기숙은 삼고무에 대하여, “이매방의 타고난 천재성과 혹독한 수련기를 거쳐 미학적으로 완성된 개인의 창조적 소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극장도 삼고무를 이매방 선생의 창작물로 보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모두 예술가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진 태도이다. 이매방 선생은 1984년 “북 하나로 승무를 추다가 1948년 북 세 개짜리를 창작해 냈다”고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점을 저작권자는 창작의 근거로 든다. 그런데, 여성국극 스타 임춘앵이 창경원 야외무대에서 이매방 선생보다 먼저 삼고무를 공연했다는 기록도 있고, ‘이매방 창작론’에 어긋나는 당대 무용가 이흥구, 조영숙의 증언도 있다.²⁾

2) 「중앙sunday」, 2019년 1월 5일 자. “BTS가 춘 이매방의 삼고무, 문화유산이나 창작물이나”

3. 저작권 등록의 실제

어느 무용평론가는 “창작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오래된 춤인 것이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앞으로 저작권 등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섬세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체로 적절한 지적이지만, 저작권 등록제도의 오류가 문제를 키웠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작권 등록은 특허권 등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발명가의 발명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연 특허권을 부여할 만한 수준의 발명인지, 그보다 앞선 발명이 없었는지 엄격한 ‘실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다. 남의 작품을 베끼지 않았다면 동시에 똑같은 작품이 창작되어 각각 저작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저작권의 성격을 ‘모방금지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도 나라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다.³⁾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등록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한다. 등록에 의한 추정력은 그리 든든한 효력이 아니다. 그가 창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대면 ‘등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더 많다. 저작권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다고 하는, 창조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영국에도 등록제도가 없다. 뮤지컬 “Cats”를 창작한 영국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는 대서양 건너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고 있다. 저작권 등록의 효율성도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안에 저작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등록이 왕성한 미국에서는 등록에 6개월이 걸린다느니 1년 만에 등록이 거절되었다느니 말이 많다.⁴⁾ 한편, 저작권 등록과정에서 창작성 여부를 실체심사 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허위등록’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대처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참조).

3)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등록(registration)은 등록의 완성(completion of registration)이라고 판단하여, 종래 등록신청을 한 후 소장을 접수하던 관행에 중지를 찍었다.
 4) 2017년 6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사무국은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중심으로 삼각형의 조명을 형상화한 영화제 심볼을 저작권 등록 신청하였다. 1년이 지난 2018년 6월 미국 저작권청은, 트로피는 이미 존재하던 것이고, 단순히 트로피를 조명으로 비추는 형상은 지나치게 단순하므로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4. 음란물도 등록되는 현실

저작권 등록 과정이 험령하니 음란물도 쉬이 등록이 된다. 음란성 판단과 저작물성 판단을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음란물을 등록하였다고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장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국가기관이 어떻게 음란물을 등록하느냐는 이유였다. 그럴 듯도 한 주장이다. 그런데, 만일 저작권위원회가 음란성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다면, 그 순간 저작권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음란성'이야말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무쌍한 불확정개념이다. 저작권위원회가 등록 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살피고 혹여 음란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면 저작권위원회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으로 시작하여 헌법소송까지 재판에 시달리며 날밤을 새워야 할 것이다. 감히 예술성을 시비하였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도 불이 날 것이다.

안무의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사연이 많다. 과거 무보(舞譜)가 있어야만 저작권 등록을 받아 준 국가도 있었으나 이제 그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상물, 사진, 안무노트 등 안무를 입증할 소박한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작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삼고무 저작권 논쟁은 저작권 등록제도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⁵⁾ 우리 저작권위원회도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다행이기는 하다.

5)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2021년 1월 28일자로 제3판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다.

5. 안무저작권의 미래

화해권고 결정으로 삼고무 저작권 논쟁은 확실히 종지부를 찍었을까? 그렇지 않다. 보존회와 유족 사이에서는 종지부를 찍었으나, 그 효과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3자는 유족의 권리주장을 염려하여 앞으로 삼고무를 공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공연장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무용가들도 기피할 것이다.

전통무용은 BTS가 아니다. 대체재가 있는 한 공연기획자가 특정 전통무용에 목을 맬 것 같지는 않다. 전통무용을 기초로 한 신무용의 저작물성, 즉 창작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진다면 창작성 자체가 부정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일본 영화 「Shall We Dance?」에 등장한 사교춤 안무 분쟁에서, 안무가는 자신이 영화에서 실연한 사교춤 스텝은 서양의 전통춤(social dance) 스텝이 아니라, 자신이 창작적으로 변용한 스텝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통 스텝은 보호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새로운 창작이므로 2차적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일본 법원은 전통사교춤 스텝에 새로운 창작을 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의 창작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있으므로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⁶⁾

최근 안무저작권학회가 발족하고, 안무저작권을 주제로 한 연구모임도 개최되고 있다.⁷⁾ 안무가 영상으로 시현될 때 안무가의 이름도 영상에 함께 표기해 달라는 ‘성명표시권’ 주장은 쉬이 수긍이 간다.⁸⁾ 나아가 창작성 논의가 신체 동작의 어떠한 선택(selection)과 배열(arrangement)에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로 심각해지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이다.⁹⁾ 아무도 일반적으로 안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분쟁 사례는 아주 드물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무용은 가장 산업화가 낮은 장르이기 때문이다. 안무의 저작물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안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일 수도 있다.

• 본 내용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 東京知裁 2012. 2. 28. 선고 平成 20 (ワ) 제9300호 “사교댄스의 기본 스텝과 PV(popular variation)스텝은 극히 짧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에 변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스텝의 범위에 속하는 흔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

7) 2023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한국안무저작권학회가 창립하였다(초대회장 함석천 부장판사). 2023년 11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 ‘2023년 저작권 연구회’의 주제는 ‘안무저작권’이었다.

8) 함석천, “새롭게 여는 저작권 세상 ‘춤’”, 『2023년 저작권 연구회 제4회 자료집』, (2023년 11월 3일), 65쪽.

9) 2019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Alfonso Ribeiro의 〈Carlton Dance〉에 대해 ‘simple dance routine’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Carlton Dance는 미국 배우 Alfonso가 시트콤에 출연하여 톰 존스의 노래에 맞추어 추었던 스윙 동작이었다. 이 스윙 동작이 유행이 되면서 극중 인물인 Carlton을 붙여 〈Carlton Dance〉로 불렸다.